\* 별첨1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산업재해)

|  |
| --- |
| **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체크리스트** 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 |
|  |
|  |  |
|  | 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내용 | 응답 | 체크 |
| 관련법 위반 | 최근 3년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| 없음 | 　 |
| 1회 | 　 |
| 2회 | 　 |
| 3회 이상 | 　 |
| 소송 여부 |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| 없음 | 　 |
| 1건 | 　 |
| 2건  | 　 |
| 3건 이상 | 　 |
| 사망 여부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없음 | 　 |
| 3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11명 이상 | 　 |
| 산재 부상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10명 이하 | 　 |
| 30명 이하 | 　 |
| 50명 이하 | 　 |
| 51명 이상 | 　 |
| 산재 질병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5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20명 이하 | 　 |
| 21명 이상 | 　 |
| 근로자 연령 | 전체 근로자 중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 | 20% 미만 | 　 |
| 30% 미만 | 　 |
| 40% 미만 | 　 |
| 40% 이상 | 　 |
| 근로성숙도(1년) | 전체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 비중 | 10% 미만 | 　 |
| 15% 미만 | 　 |
| 20% 미만 | 　 |
| 20% 이상 | 　 |
| 직원 안전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교육시간 | 3배 이상 | 　 |
| 2배 이상 | 　 |
| 1배 초과 | 　 |
| 1배 이하 | 　 |
| 외주 안전교육 | 하청직원 작업 전 (1) 안전교육 실시, (2) 점검표 작성 | 실시O, 작성O | 　 |
| 실시O, 작성X | 　 |
| 실시X, 작성O | 　 |
| 실시X, 작성X | 　 |
| 야간야외작업 | 자율점검표 작성 및 긍정 비중 | 긍정비율 9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7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5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50% 미만 | 　 |
| 하청 근로자 비중 | 전체 근로자 대비 외부하청 근로자 비중 | 10% 미만 | 　 |
| 20% 미만 | 　 |
| 30% 미만 | 　 |
| 30% 이상 | 　 |
| 안전보건점검횟수 |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\* | 1년에 4회 이상 | 　 |
| 1년에 3회  | 　 |
| 1년에 2회  | 　 |
| 1년에 1회  | 　 |
|  |  |  |  |
| \* 자율점검표 안내 |
| 1. 고용노동부 제공 자율점검표를 우선 적용하고, 해당 업종은 업종우선 |
|  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|
|  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|
|  - 건설업 자율점검표 |
|  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|
| 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|
| 2.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 |

\* 별첨2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시민재해)

|  |
| --- |
| **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**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내용 | 응답 | 응답 |
| 관련법 위반 | 최근 3년내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| 없음 | 　 |
| 1회 | 　 |
| 2회 | 　 |
| 3회 이상 | 　 |
| 소송 여부 | 현재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| 없음 | 　 |
| 1건 | 　 |
| 2건  | 　 |
| 3건 이상 | 　 |
| 사망 여부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 | 없음 | 　 |
| 3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11명 이상 | 　 |
| 시민 부상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| 10명 이하 | 　 |
| 30명 이하 | 　 |
| 50명 이하 | 　 |
| 51명 이상 | 　 |
| 시민 질병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| 5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20명 이하 | 　 |
| 21명 이상 | 　 |
| 조직 및 인원 | 중대시민재해를 전담하는 조직 여부 | 전담부서, 전담직원 O | 　 |
| 겸직부서, 전담직원 O | 　 |
| 겸직부서, 겸직직원 O | 　 |
| 부서배정 /직원배정없음 | 　 |
| 안전보건점검횟수 |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\* | 1년에 4회 이상 | 　 |
| 1년에 3회  | 　 |
| 1년에 2회  | 　 |
| 1년에 1회  | 　 |
| 모의훈련 | 응급사태 매뉴얼 보유 및 모의 훈련 실시 | 매뉴얼 X, 모의훈련 O | 　 |
| 매뉴얼 O, 모의훈련 O | 　 |
| 매뉴얼 X, 모의훈련 X | 　 |
|  |  |  |  |
| 자율점검표 안내 |
| 1. 공공기관에서 만든 안전관리 점검표를 우선 적용 |
|  - 환경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원료, 제조물) 점검표 |
|  - 국토교통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시설물) 점검표 |
|  -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세부점검표 |
|  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 |
|  -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 점검표 |
|  - 고용노동부 제공, 자율점검표 |
|  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|
|  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|
|  - 건설업 자율점검표 |
|  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|
| 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|
| 2.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 |
|  |

**※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 목적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